프로젝트 지분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양도인	_(이하	"양도인"	이라	함)고	} 양	수인_		(০) চী	- "o	냙수인"	이라
함)은 현재 제	작중인 프	로젝트 _		에	대한	지분(이하	"지분"	이라	함)과	관런
하여 다음과 같	·이 계약을	· 체결하다	ŀ .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양도인이 현재 투자를 의뢰한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지분으로 한다.

제3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 저작물의 지분을 양도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년 _월 _일까지 지분 이전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 (3) 양도인은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부속계약서에 합의한 간격을 두고 공지할 의무가 있다.
- (4) 양도인은 프로젝트가 개발 완료된 이후 해당 게임에 대한 수익공개와 재무제표를 합의된 가격을 두고 공시할 의무가 있다.
- (5) 양도인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정들의 경우 공시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조 (양수인의 의무)

-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지급방식: 부속계약서에 합의된 수익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지급시기 : 부속계약서에 합의된 날짜에 지급한다.
- (2) 양수인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진행과정을 보고받는 이외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제5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1. 대상저작물의 수익권 일부 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혹은 부속계약서에 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0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 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 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타부속합의)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4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년 __월 __일

양도인: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u>'프로젝트 지분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대한 부속 계약서</u>

기업과 개인 김용운이년 _월 _일에 채결한 '수익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이하 "양도 계약"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이전 계약의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양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수익권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다
제3조 (판매량과 금액) 양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지분은 다음과 같이 가격을 책정하고 그 중 아래와 같은 비율을 양도한다.
총 가격(100%기준):원정 판매비율(100%중 비율):% 총 판매 대금 :원정
제5조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 1. 대금지급시기의 경우 경매를 완료했을 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1차 판매에서 전부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최소가격 인하 후 다시 판매를 진행할지혹은 판매를 포기할 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 2차판매의 진행 방식 (판매 포기/인하판매(%))
제6조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개발기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일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진행 공시 간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일(경매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제7조 (프로젝트 개발 완료 후) - 프로젝트 개발 완료 후 수익공개 간격일

- 제무제표 공시 간격 ____일

제8조 (진행이전 공시를 어겼을 경우)

1. 개발기간의 경우

계약상의 일시보다 30일 연기될 때마다 총 투자 금액의 10%에 연기된 횟수가 곱해진 값 더하기 총 투자금액이 위합금으로 책정되고 총 3달 개발을 미룰 수 있다.

게발이 실패할 경우 위합금을 지분해야한다.

2. 개발완료 후의 경우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공시 기간을 1주일 이상 어겼을 경우 경고를 부여하고 총 5번 경고가 누적되면 게임사는 누적되는 순간의 Shift의 거래가 격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줘야한다,

제9조 (공시 관련)

공시는 정해진 간격전후로 3일 이내에 공시해아한다.

공시는 총 수익공개와 정기공시로 나누어진다.

수익공개 시 매출,비용 수익 총금액과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해야한다.

개발완료 후 공시의 경우 제무재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해야한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 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 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4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 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기타부속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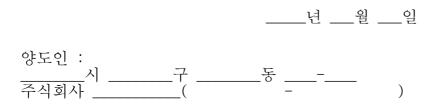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8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대표이사 ____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